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2. 25(금) 17:00		
배포일시	2011. 2. 25(금) 16:00	담당부서	국고국 국채과
담당과장	우해영 (Tel 02-2150-5130)	담당자	곽상현 사무관 (Tel 02-2150-5132)

제목: 국채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을 촉진 및 시장지향적인 제도 확립을 위한 국고채전문딜러(Primary Dealer) 제도 개편 추진

- 기획재정부는 국고채전문딜러(PD : Primary Dealer)의 경쟁을 촉진하고 선진적인 국채시장에 부합하는 PD제도 확립을 위하여 「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편방안」을 마련
- '99년 PD제도 도입이후 국채의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채시장이 크게 활성화
 - 이와 같은 국채시장 발전에는 PD들의 국채 인수 및 시장조성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
- 그러나 국채시장이 활성화·선진화 되고 있음에도 PD제도는 국채 소화에 중점을 둔 과거 제도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여 PD간 경쟁부진 등 문제점 야기
 - PD 지정 취소 요건이 최소한도로 규정되어 있어 PD간 경쟁 촉진과 경쟁력 있는 기관의 신규진입을 저해
 - 또한 국채시장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PD에 대한 인센티브는 과거 발행실패 위험이 높았던 기간의 수준을 유지
- PD 진입·퇴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PD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인센티브 축소 등 시장지향적인 PD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편 추진

〈주요 내용〉

① 예비국고채전문딜러(Preliminary Primary Dealer) 제도 신설

- PD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중 PD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PD로 지정하고 일정수준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*

* 국고채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되 유통 및 시장조성 의무도 동시에 부여. 다만 비경쟁인수권한, 국채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미부여

- 연간 유통 및 시장조성실적 등을 기존 PD사들과 비교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PPD는 PD로, 실적이 부진한 PD는 PPD로 전환

⇒ 실적에 따른 PD·PPD간 승강제 운용

② PD 평가기준 강화

- 인수실적 평가시 실제 인수한 물량 외로 실적으로 인정받는 물량에 대한 배점을 하향 조정하여 PD들의 적정 금리 제시 유인을 강화

* 현행 규정상 낙찰금리+3bp내에 응찰액은 모두 인수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

-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하여 장기국채 선물시장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채 시장 활성화 도모

③ PD의 인센티브 축소

- 국채시장 활성화 추이를 감안하여 PD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

- 우선적으로 '11년부터 PD에 대한 금융지원(국채금융)의 규모를 줄이고('10년 2조원 → '11년 1조원) 지원대상 PD의 수도 축소

* PD금융지원(국채금융) : 공공자금관리기금(국고채 발행기금) 재원을 활용하여 RP 거래 형태로 PD에게 低利(콜금리의 30%~80%)로 금융지원

< 추진 일정 >

- 금번 제도개선은 관련규정(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, 재정부 고시) 개정후 '11년 3월부터 시행
 - 다만, PD·PPD간 승강제는 '11년 실적 평가후 '12년부터 시행
-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

기획재정부 대변인

국고채전문딜러(Primary Dealer) 제도 개편 방안

'11. 2. 25

국 고 국
국 채 과

1. PD 제도 평가

(1) PD제도 도입의 성과

- (국채시장 발전) '99년 동 제도 도입이후 국채 발행·유통량이 급증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채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
 - 이와 같은 국채시장 발전에는 PD제도와 PD사들의 국채 인수 및 시장조성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
 - 특히, '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따라 국채발행액이 급증하여 발행실패 우려가 제기되었으나, PD들의 적극적인 인수 및 시장조성 노력으로 무난하게 소화

<최근 10년간 국고채 발행규모 및 거래량(조 원)>

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
발행액	15.2	22.3	19.4	34.5	56.0	62.6	60.7	48.3	52.1	85.0	77.7

- (장내거래 활성화) PD의 장내거래 시장조성 의무 강화에 따라 장내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

<최근 국고채 장내거래 비중 추이(조 원)>

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
장내	21.6	10.1	42.6	207.9	358.4	337.7	267.4	316.7	321.2	427.1	373.1
장외	251.3	443.1	343.2	453.9	707.8	729.3	660.1	570.5	603.0	1,057.2	1,440.8

- 이에 따라, 국채 유통시장의 객관성·투명성이 제고되고 지표금리로서의 국채금리 역할이 크게 증대

* '97년 외환위기 이전 지표채권은 회사채였으나, 이후 국채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'01년부터 국고채(3년물)가 지표채권으로 기능

[2] **현행 PD제도의 문제점**

□ **(진입·퇴출의 어려움)**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**경쟁력 있는 PD를 육성하고 실적이 부진한 PD는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** 하나

○ 현행 PD 지정 취소 요건이 PD의 평균 보다 지나치게 낮아 **시장조성 역량·관심도가 부족한 PD도 지속적으로 활동**

○ 특히 최근 국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들이 **PD 지정을 희망하고 있으나**

- 국고채 시장규모를 감안시* **기존 PD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규 PD 지정이 곤란**

*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금리왜곡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PD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

□ **(과도한 인센티브)** 그 동안 국채 발행실패 위험 관리 및 유통시장 조성 목적으로 PD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왔으나, **국채시장 안정 등 여건 변화로 조정 필요**

*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PD에게 국채 입찰참여 권한 외의 국채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운용하고 있지 않음

○ 특히 **국채금융지원***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임에도 불구하고 **시장조성 기여도가 높지 않은 PD에게도 혜택이 부여**

* 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低리로 금융지원을 제공. PD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나, 하위 5개 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혜택을 부여

□ (불합리한 인수실적 산정방식) 현행 제도상 실제 인수물량 외에 최고낙찰금리+3bp 이내의 응찰금액은 인수 여부에 관계 없이 인수 실적으로 산입

○ 동 제도는 PD들의 인수 부담 완화 및 국고채에 대한 수요 확대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며, 이후 응찰률은 급증

- 그러나, 이후 실제 인수물량과 관계없이 평가점수로 인정 되는 물량이 더 많아지는 모순 발생

* '10년 3분기 실적 : (경쟁입찰)15.9조원 (3bp내 응찰 인정) 26.6조원

○ 이에 따라, 실제 인수의지가 있는 PD와 인수 실적만 올리려는 PD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

* 현재 1개 기관의 복수응찰이 가능하여 낙찰가능한 금리와 함께 3bp내에 추가로 응찰하여 평가실적만 올릴 수 있는 유인 존재

□ (장기국채 선물시장 참여 저조) 최근 장기국채선물 활성화 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PD들의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10년 국채선물 거래가 여전히 부진

○ '10.7월에 발표한 「장기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」에 따라 '10.10월 거래소와 선물시장 참여자간 시장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나,

- '11.2월 현재 10개 기관만 참여 (PD사 8개, 선물사 2개)

2. 개편 방안

〈 기본 방향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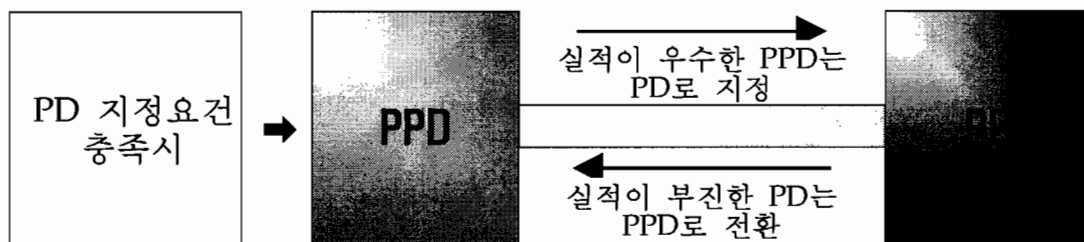
- ◇ PD의 진입·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PD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조성 역량을 강화
- ◇ PD들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시장지향적인 PD 제도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개선

(1) 국고채전문딜러(PD) 평가기준 강화

- (PD자격 유지 요건 강화) 예비국고채전문딜러(PPD)를 신설하여 PD중 의무이행 실적이 부진한 PD는 PPD로 전환
 - * '예비국고채전문딜러제도 도입'(p5) 부분에서 상세 설명
- 연간 평가결과 실적이 자격요건 취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정수준 이하의 PD는 PPD로 전환
- 또한, 금융관련법령 위반 또는 금융기관 제재 사실 등도 PD 자격 정지·취소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
- (인수실적 평가기준 개선) 실제 국고채를 인수한 PD를 우대하기 위하여 최고낙찰금리+3bp내 실적은 50%만 인정
 - 다만 PD들의 인수 의무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수 실적 평가 배점을 하향 조정(28점→25점)
- (장기국채선물시장 참여 인센티브 강화) PD 실적 평가시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 및 거래실적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
 - 현행 5점→8점으로 상향조정(인수 실적 배점 하향조정 28점→25점)
 - * 현행 PD 평가 항목 및 배점 : (인수) 28점, (바이백) 7점, (호가제시) 40점, (보유) 10점, (현물거래) 10점, (선물 거래) 5점
 - 장기국채선물 시장조성자 여부를 PPD의 PD 전환시 고려

(2) 예비국고채전문딜러(Preliminary Primary Dealer) 제도 도입

- (제도 개요) PD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중 PD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PPD로 지정
 - 전체 PD는 20여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무이행 실적이 우수한 PPD를 PD로, 부진한 PD는 PPD로 전환하는 등
 - 'PD와 PPD간의 승강제'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
 - PPD도 PD에 준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므로 최소 지정요건은 PD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, PPD 지정 이후 의무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PD로 승격



※ 과거 예비국고채전문딜러(PPD) 활용 사례

- (도입 시기) '99년 PD제도 신설시 PPD 제도를 함께 도입
- (운영 방식) PD 지정 신청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우선 PPD로 지정하고 1년간 실적을 평가하여 정식 PD 지정여부를 결정
- (폐지) '07.6월 PD 지정요건이 강화되면서 PPD 제도 운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 제도를 폐지

- (의무·권한) 시장조성 의무·권한은 PD보다 제한적으로 부여
 - PPD의 국고채 인수 물량에 제한이 있음을 고려, 시장조성(장내시장에서 호가 제출) 및 거래 의무만 부여
 - PPD에게는 입찰참여 이외의 권한은 부여하지 않으며 입찰 한도도 PD의 50% 수준으로 제한

		PD	PPD
의 무	인수	▪ 입찰 물량의 10% 이상 인수	▪ 없음
	호가제시	▪ 매도·매수 양방향 호가 10개	▪ <좌 동>
	유통	▪ PD 평균국고채거래량의 200%	▪ <좌 동>
	보유	▪ 국고채 평균잔액 1조원 이상	▪ 없음
권 한	입찰참여	▪ 입찰물량의 30%까지 인수	▪ 입찰물량의 15%까지 인수
	비경쟁인수	▪ 우수PD 25%, 차상위 5개15%, 기타 10%	▪ 없음
	금융지원	▪ 평가실적에 따라 저리로 용자 제공	▪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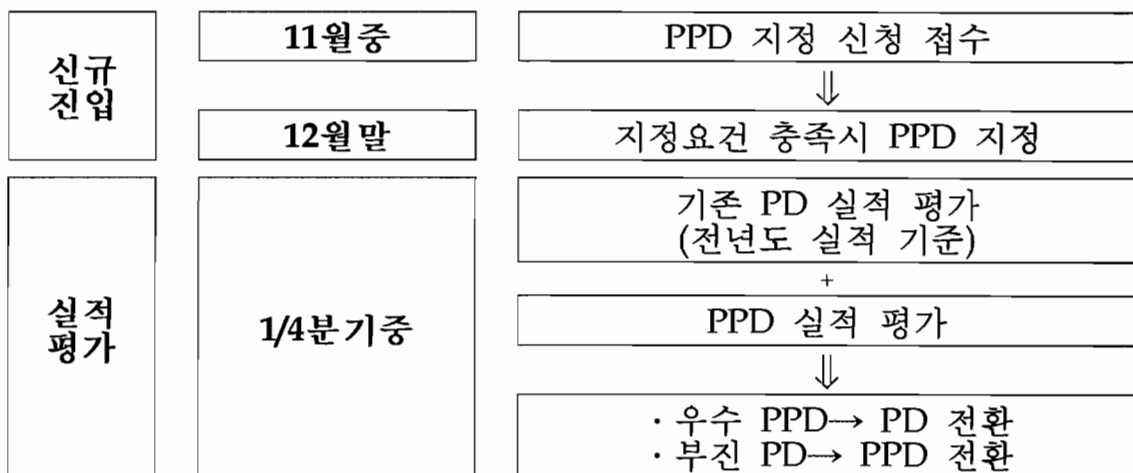
□ (평가방식) PPD로 지정된 연도의 연간 유통, 시장조성(호가제시 등), 선물시장 거래 실적 등을 대상으로 PD와 비교 평가

* PPD는 PD에 비하여 인수가능 물량을 50%로 제한하는 점을 감안하여 인수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

○ PPD 신청, 평가 및 전환은 안정적 거래환경 조성 측면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실시

- 매년 12월말 PPD 지정 신청을 처리하고 PPD와 PD실적 평가는 1~12월간 실적을 기초로 연초 실시

< PPD 신청, 평가, 전환 일정 >



[3] 국고채 전문딜러(PD) 인센티브 축소

- 국채시장 활성화 추이를 감안하여 현행 PD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
 - PD 금융지원은 '11년부터 규모 축소('10년 2조원→'11년 1조원)
 - '11년 하반기부터 지원대상을 우수 PD로 한정하며, 중장기적으로는 폐지 추진

3. 향후 추진 계획

- 「국고채발행규정」 개정 : '11.2월 중
 - PPD 제도 및 PD 퇴출요건 강화 : '11.3월부터 시행
 - 다만, PD·PPD 승강제는 '11년 실적 평가후 '12년 부터 시행